

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
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우경란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4. 28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521호로 2025년 4월 14일 우경란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,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, 정보 제공을 체계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5. 4. 15.~2025. 4. 22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지원대상의 연령을 하향하고 지원사업 및 교육을 확대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,

□ 주요 내용으로

- **안 제2조(정의)**는 “고령운전자”의 연령을 “70세”에서 “65세”로 낮춤.
- 고령화에 따라 서울시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2019년 91만명(11.68%)에서 2023년 기준 123만명(15.6%)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
서울시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현황 ¹⁾ (단위: 명)					
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전체 면허자 수	7,810,868	7,864,542	7,882,536	7,905,359	7,900,722
고령운전자 (65세 이상)	912,500	1,001,483	1,079,724	1,161,296	1,231,259
비 율	11.68%	12.73%	13.69%	14.7%	15.6%

- 또한,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, 12월에는 양천구 목동

1) ‘서울 열린데이터 광장’ 통계명: 서울시 운전면허 소지자(연령별) 통계

시장에서 74세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으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.

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²⁾				
구 분		2021년	2022년	2023년
65~69세	사망자 수	20	26	28
	부상자 수	3,629	3,995	4,362
70세 이상	사망자 수	30	20	14
	부상자 수	3,357	3,973	4,767
합 계	사망자 수	50	46	42
	부상자 수	6,986	7,968	9,129

- 한편,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70세 이상 뿐만 아니라 65~69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, 2022년 및 2023년 기준 사망자 수는 70세 이상보다 65~69세 고령운전자로 인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한편,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중 “교통카드 지원사업”은 서울시 사업으로 70세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지만, “스마트 정보 교육” 등 그 밖에 사업 및 교육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.
- **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는 구청장의 책무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,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.
- **안 제4조(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)**

2)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: 서울시 고령운전자 사고 현황자료

제1항은 현행 조례에 “대중교통요금 등”을 ▲영등포사랑 상품권 ▲교통카드 ▲대중교통 이용 혜택 등으로 세분화함.

- 한편, 세분화된 지원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」 3)제4조(재정지원)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, 추후 서울시에서 시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 사항을 확대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서울시 사업 외에도, 영등포구에서 필요시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제2항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, 안 제2조에 따른 연령의 범위 내에서 사업마다 적절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입법조치라 사료됨.
- 안 제5조(교육)는 “4)스마트 정보교육”을 추가하였는데, 이는 “앱과 인터넷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경로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”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판단됨.
- 안 제6조(정보제공)는 「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

3) 제4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30만원 이내의 「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사랑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
2.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
3.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4)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(정의) 3. "스마트 정보교육"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.

위한 지원 조례 제5조5)에 따라 실시한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고령운전자 및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70세 이상뿐만 아니라 65세~69세 사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원대상인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70세→65세로 하향하고,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 정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
- 5) 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
1.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
 2.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
 3.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
 4.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
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
-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참고 자료

1

교통안전법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

제23조(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)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